

##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[ ]주택임차 [ ]상가임차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임차인 (임차하여 사용하 려는 자 포함)	성명(상호)	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(사업장)	전화번호
임대인	성명(상호)	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(사업장)	전화번호

임차 건물 소재지(건물의 종류·명칭 및 동·열·층·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)

[ ] 임대인의 동 의가 필요한 경우	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제1항에 따라 위 임차인(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포함)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.  년 월 일  임대인 (서명 또는 인)
[ ] 임대인의 동 의가 필요하 지 않은 경우	※ 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따 른 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를 말합니다.

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에 따라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) 1부 2.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임대차계약서 사본) 1부 (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 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### 유의사항

- 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에 따른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.
-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(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)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이 가능하며, 납부하지 않은 각 국세별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국세의 경우 열람 시점과 미납부 세액 검증 및 전산 입력 시점 간 시차로 인하여 조회 내역서에 일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